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자 관리 규정

제정 2004. 3. 8. (규칙 제423호)

개정 2011. 9. 8. (규칙 제569호)

2011.11.15. (규칙 제578호)

2016.11.11. (규정 제7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자(입학 시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이하 “특기자”라 한다)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종목과 특기자) ① 학칙 제76조의 체육학과 육성종목은 다음과 같다.

레슬링, 배드민턴, 복싱, 빙상(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유도, 육상, 체조, 태권도, 펜싱, 근대5종, 조정, 카누, 테니스, 하키, 핸드볼, 골프, 볼링, 스키(노르딕복합, 스노보드, 스키점프,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스키), 썰매(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바이애슬론, 컬링
② 체육학과 육성종목이 아닌 다른 학과 특기자 종목은 매 학년도마다 대학입학 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경기력향상위원회) ① 특기자의 훈련, 출전, 생활관 입·퇴사 및 보건진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적인 훈련의 기본방침 및 계획
2. 연간 대회 출전계획
3. 체육 국제 교류 (해외 출전 및 해외 전지 훈련)
4. 실험 실습 기자재 선정
5. 훈련 및 대회 입상 분석
6. 생활관 입·퇴사(경기력)
7. 보건진료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9.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훈련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학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체육학과장, 체육과학연구소장, 생활관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조교수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총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관련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대회 출전계획) ① 연간 대회 출전계획은 훈련처에서 매 학년 초 각 부의 출전 계획을 심사하여 수립하되, 예산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회출전은 연간 대회 출전계획 및 관련문서를 근거로 지도교수가 대회출전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간 대회 출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회출전 등) ① 특기자는 총장이 정하는 대회에 연간 1회 이상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특기자의 출전 대상 대회는 전국 규모대회로 한다. 다만,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지역 선발전은 예외로 한다.

③ 국제대회 출전은 해당 중앙경기가맹단체에서 국가 대표(또는 국가 대표급)로 선발되어 출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제 경험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각 부에서 필요한 국제대회 출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회출전 제한) 특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전을 제한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특별히 추천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1. 재학 중 2회 이상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
2. 본 대학교에서 정한 체력기준 이하인 자
3.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기준에 위배되는 자

제7조(출전경비 및 격려금) ① 총장이 정하는 대회출전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및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격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출결처리) 총장이 인정하는 대회 출전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9조(출전결과 보고) ① 각 부의 지도교수는 대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출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훈련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전결과보고서에는 경기실적, 개인별 경기력 분석 · 평가 · 대책 및 대회참가팀의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경기력에 의한 생활관 입·퇴사) ① 경기력에 의한 생활관 입·퇴사는 각 부별, 남·여별 인원을 기준으로 경기실적순위와 지도교수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관 입·퇴사는 매 학기 시작 10일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1조(퇴사 심의 기준) 경기력에 의한 생활관 퇴사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실기 학점이 C학점 이하 인 자
2. 경기실적 평가에 의한 해당 종목 서열 순위가 80% 이하에 속한 자
3. 지도교수가 경기력 향상에 저해가 된다고 생활관 퇴사를 요청한 자
4. 위원회에서 퇴사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

제12조(학기 중 입·퇴사) ① 퇴사한 특기자가 경기력이 향상되었을 경우에 각 부의 지도교수가 훈련처장에게 입사를 요청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에 입사 시킬 수 있다.

② 입사한 특기자가 부상 또는 질환 등으로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각 부의 지도교수가 훈련처장에게 퇴사를 요청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에서 퇴사 시킬 수 있다.

제13조(대회출전 및 훈련 위반자 징계) 특기자가 총장이 정한 대회에 불참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전하는 등 대회 출전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학칙 제86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423호, 2004. 3. 8.)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체육특기자관리규정(규칙 제397호)은 폐지한다.

부 칙 (제569호, 2011. 9.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78호, 2011. 1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21호, 2016. 11.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